

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 요청 자료보고서

문화재 구분	지정종류		
	유형/종목		
대상 문화재 현황	명칭	한글	한자
		영문	
	시대 / 연대		
	소재지		
	구조/형식/형태		
	재료 / 품질		
	수량/규모/크기	해당 문화재	
	※ 상세내용은 3쪽~5쪽 중 해당 쪽에 적습니다.	보호구역	
		보호물	
	현재용도/기능		
관리단체(안)	단체명	성명(명칭)	전화번호
		주소	
	선정사유		
지정가치 및 근거기준			

위와 같이 「문화재보호법」 제23조·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에 관한 자료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

직인

문화재청장 귀하

첨부서류	
1.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의 검토의견서 2. 관계전문가의 조사 의견 및 시·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관계자료 3. 문화재의 연혁·특징,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 4. 문화재 도면자료 5. 문화재에 대한 학술·고증자료 6. 문화재 사진자료 7. 문화재(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)의 위치도, 지적도, 수지도, 지형도 및 이미지파일 등 8. 「문화재보호법」 제13조제1항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안에 있는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기준 9. 문화재 보존 정비·활용계획 10.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계획 현황 11. 해당 문화재 소유자(단체)의 취득 경위에 관한 자료 12. 방재시설·방재인력 등 방재자원 현황 및 방재 계획(국보·보물 중 건조물, 사적 및 국가민속문화재에 한정한다) ※ 위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할 때에는 제2쪽 제14호의 첨부 유의사항을 참조하시고, 첨부서류는 책자(컬러인쇄, 15부) 및 CD(1장)로 제출하여야 합니다.	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. 건축물대장 등본 2. 건물등기부 등본 3. 토지(임야)대장 등본 4. 토지등기부 등본 등

작성 요령 및 첨부 유의사항

1. 지정 종류: 「문화재보호법」 제23조,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류를 적습니다.
2. 유형/종목: 「문화재보호법 시행령」 별표 1의2의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에 따라 적습니다.
(예) 건축문화재/궁궐, 미술문화재/산수화)
3. 명칭
 - 가. 문화재의 성격·유형·시대 등 그 대표성·상징성을 나타내거나 일반에 널리 알려진 명칭을 부여합니다.
 - 나. 순수한 고유 명칭만으로는 일반인이 해당 문화재나 소재 지역을 알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고유 명칭 앞에 행정구역 명 또는 고유한 지명을 병기합니다.
 - 다.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문화재 지정 명칭의 부여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릅니다.
4. 시대/연대: 석기시대, 청동기시대, 철기시대, 삼한시대, 삼국시대, 고구려, 백제, 신라, 가야, 발해, 통일신라, 고려, 조선, 대한제국기, 일제강점기 등을 적습니다. 다만, 건립·제작·조성 기간 및 연대가 정확히 밝혀진 경우에는 이를 적습니다.
5. 소재지
 - 가. 행정구역상의 소재지와 지번(地番)을 적습니다.
 - 나. 여러 필지인 경우에는 숫자가 앞선 지번이나 가장 핵심구역으로 판단되는 지번을 대표 지번으로 적고 그 뒤에 ‘외’ 또는 ‘등’ 을 붙입니다.
6. 구조/형식/형태: 학문적으로 정의된 구조나 형식·형태 등을 적습니다.
7. 재료/재질: 문화재를 이루는 주된 재료 및 재질을 적습니다.
8. 수량/규모/크기: 해당 문화재(지정구역), 보호구역 및 보호물을 건축물, 구조물 등으로 구분하여 그 성격에 맞게 수량(동수, 기수 등), 규모(층수, 높이, 필지 수 등) 및 크기(면적 등)를 적습니다.
9. 현재의 용도/기능: 현재 쓰이고 있는 용도, 기능 및 역할 등을 적습니다.
10. 소유자: 해당 문화재(지정구역)의 소유자(단체)의 성명 및 주소를 적습니다.
11. 연혁/유래/특징
 - 가. 문화재의 연혁, 유래 및 특징에 대하여 중요 내용을 중심으로, 개조식(個條式)으로 간결하게 적습니다.
 - 나. 상세한 내용은 첨부서류(3. 문화재의 연혁·특징,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)에 적습니다.
12. 관리단체(안): 「문화재보호법」 제34조에 따른 문화재의 관리단체 지정에 대한 의견을 적습니다.
13.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
 - 가. 「문화재보호법」 제2조제1항, 제23조,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및 「문화재보호법 시행령」 별표 1의2 또는 별표 2에 따른 문화재 지정 가치 및 특징 등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반영하여 간결하게 적고, 반드시 지정기준상의 근거 항목을 적시하여야 합니다.
 - 1) 역사적·학술적·예술적·경관적·민속적·기술적 가치(중요한 시대정보, 대표성, 희소성, 상징성, 역사적 사건 및 저명 인물 연관성, 예술적·민속적·기술적 가치 등)
 - 2) 진정성·완전성 구비 여부 및 다른 유사 문화재와의 차별적 특징 등
 - 나. 상세한 내용은 첨부서류(3. 문화재의 연혁·특징,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)에 적습니다.
14. 첨부 유의사항
 - 가. 첨부서류 제4호의 도면자료는 배치도, 평면도, 입면도, 단면도 등을 말합니다.
 - 나. 첨부서류 제5호의 문화재에 대한 학술·고증자료는 연구보고서, 조사보고서, 실측자료, 문헌자료, 옛 사진자료, 탁본자료 등을 말합니다.
 - 다. 첨부서류 제6호의 문화재 사진자료는 항공 또는 위성사진, 원경, 근경, 전경, 세부현황 및 2,000×1,500 픽셀 이상의 디지털 파일을 말합니다. 다만 전적·서적의 경우 표지 및 본문 전체, 회화·조각·공예 등의 경우 전체 및 세부상세[전·후, 좌·우, 상·하, 화기(畫記, 그림이나 불화 등에 제작 경위와 참여자 등을 적은 기록), 제발(題跋, 서화나 책 등의 첫머리와 끝머리에 적은 글을 아울러 이르는 말), 명문(銘文, 쇠·비석·그릇 따위에 새겨 놓은 글), 문양, 부속물, 보호시설, 복장유물 등] 사진을 컷별로 용량이 5MB 이상이며 해상도가 300dpi 이상인 JPG파일로 제출합니다.
 - 라. 첨부서류 제7호의 문화재(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)의 위치도, 지적도, 수지도, 지형도 및 이미지파일 등은 각각 위치도, 지적도(축척 5백분의 1 이상 ~ 1천5백분의 1 이하), 수지도(축척 5천분의 1), 지형도(축척 5백분의 1 이상 ~ 1천5백분의 1 이하), 이미지파일 및 캐드 또는 셰이프(SHP)파일을 말합니다.
 - 마. 첨부서류 제11호의 해당 문화재 소유자(단체)의 취득 경위에 관한 자료의 제출은 건조물이 아닌 국보, 보물, 중요민속문화재의 경우에만 해당하며, 증여품인 경우 이에 대한 증빙자료, 구입품인 경우 매매사본 등 정당한 소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합니다.

문화재 지정대상 및 범위 설정(안)

☐ 문화재가 건조물인 경우
(면적: m²)

연 번	명칭	시대/ 연대	구조/형 식/형태	토지면적	용도	소재지 /지번	소유자		관리자		점유자	
				건물면적			성명	주소	성명	주소	성명	주소
				(연면적,건축면적) 수량								
				()								
				()								
				()								
계				()								

☐ 문화재가 토지인 경우(문화재구역)
(면적: m²)

연 번	소재지	지번	지목	면적(m ²)	지정면적 (m ²)	소유자		관리자		점유자	
						성명	주소	성명	주소	성명	주소
계											

보호구역 지정대상 및 범위 설정(안)

(면적: m²)

연 번	소재지	지번	지목	면적 (m ²)	지정면적 (m ²)	소유자		관리자		점유자		설정근거 및 사유
						성명	주소	성명	주소	성명	주소	
계												

보호물 지정대상 및 범위 설정(안)

(면적: m²)

연번	명칭	구조/ 형식/ 형태	크기/ 수량	토지면적	보호물면적	소재지 /지번	소유자		관리자		점유자		설정근거 및 사유
							성명	주소	성명	주소	성명	주소	
계													

문화재의 인문환경 및 현상·관리 상황

구 분	내 용	비 고
입지 및 역사 문화환경		
현재의 보존 상태 및 보호·관리상 조치가 필요한 사항		
보수·정비 및 현상변경 이력		
부속시설물(주변) 현 황		
소재지 및 주변의 지 정·등록 문화재 분포 현황		
그 밖의 사항		

방재시설 · 방재인력 등 방재자원 현황 및 방재 계획

구 분	내 용	비 고
방재시설 설치현황		
방재시설 설치계획		
방재인력 배치현황		
방재인력 배치계획		
그 밖의 사항		